

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

2018. 1.



목 차



I. 2017년 성과와 평가	1
I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	3
III. 2018년 업무추진방향	5
1. 기본방향	5
2.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	5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	7
1. 주요정책	7
2. 당면현안	28
[붙임] 2018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	30

I. 2017년 성과와 평가

1 성 과

□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 중점 추진

- ▲현장노동청 운영('17.9.12~9.28), ▲청년·여성·장애인 간담회 ▲산재 사고 현장 지휘(STX 폭발사고, 의정부 타워크레인) 등 현장 행보 지속

☞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,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 해소



□ 부당노동행위·불법파견 등 엄정 대처

- 부당노동행위 엄벌*,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** 등 노동 현장의 위법·불합리한 행위 개선 노력 강화

*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집중감독('17.6.29~7.31, 전국 59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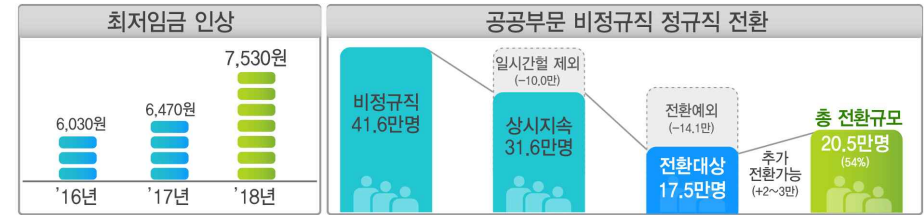
** (제조업) 만도헬라(325명) 등 원·하청 근로감독 실시, 불법파견 확인 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(비제조업) 제빵업 프랜차이즈(파리바게뜨)에 직접고용(5,300여명) 시정지시

☞ '노동'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

□ 저임금·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노력

- 최저임금을 인상(전년대비 16.4%)하고, 재정지원(일자리안정자금) 등 안착 방안 마련을 병행하여 소상공인·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
-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여, 민간부문 고용관행 개선의 마중물 역할

☞ 저소득·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'노동시장의 격차' 완화 노력



□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

- ▲일자리 상황판 설치(5.24), ▲일자리 100일 플랜(6.1), ▲「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」 수립·발표(10.18) 등 일자리 중심 범정부 정책 추진
- '17년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 3대 패키지* 정책을 추진하고, '18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 13조원 수준** 확충('17년 대비 14.8% ↑)

* 청년구직촉진수당, 청년 추가고용장려금(2+1), 청년 내일채움공제제도

** '18년 정부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원 확보('17년 대비 12.6% ↑)

☞ '일자리 주무부처'로서 정부 일자리 정책방향을 수립(관계부처 합동), 예산·평가체계 등의 일자리 중심 지원체계 구축

2 평 가

□ 법·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- '17.5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추진 하여 온 바, 향후 법·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량 집중 필요

□ 사회적 대화의 틀 조성에는 미흡

-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 노력, 2대 지침 폐기 등에도 불구하고,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☞ '17.5월 정부 출범 이후 현장지도·감독 강화, 주요대책 발표 등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변화 기틀 마련

☞ '18년에는 변화를 확산하고,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I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

1 [노동시장] 청년 등 일자리 어려움 지속

□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의 어려움 심화 예상

- 금년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'17년과 유사하거나 양호*하고,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와 유사할 전망(32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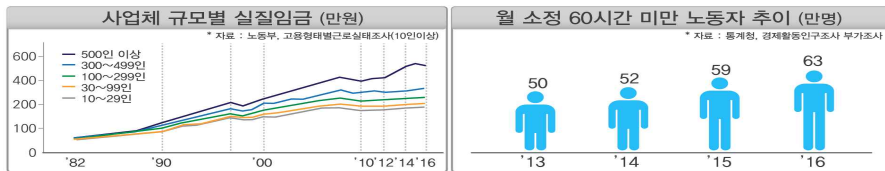
* '18년 성장률은 '17년과 비슷한 2.9% ~ 3.2% 내외로 전망

- 그러나, '21년까지 에코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층의 경우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* '17년 기준 청년 실업률(9.9%)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

□ 일자리 격차도 여전하여 일자리 질 개선 요구도 지속될 전망

-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는 확대 추세이며,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단시간 노동자도 매년 증가



-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·요구가 높아질 전망

2 [노사관계] 노사갈등 적극 관리 필요

□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예상

- ▲근로시간 단축, ▲최저임금 인상, ▲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은 노사 모두에 파급력이 큰 갈등 이슈
- 따라서, 노동정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을 지속하면서, 노동 이슈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·적극적 관리 필요

3 [외부여건] 정치·사회적 불확실성 증대

□ 집권 2년차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

- '18년은 예산 등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사실상의 첫해로,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은 상황

-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, 갑질, 성희롱, 부당노동행위 등 직장 내 불합리·불공정 사례*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선 목소리 확대

* '직장인 갑질 119' 출범(온라인 언론조사, 오픈채팅 등 활동영역 확대),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 소통 채널 적극 활용

□ 다양한 정치 일정이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

- '18년에는 지방선거(6.13), 개헌 논의*, 국회 원구성 등의 일정 예정

* 국회 「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위」 활동 기한(~'18.6월말)

- 특히, 6.13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입법, 제도개선 등에 주력하기 쉽지 않을 전망

□ 미래 대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

- ▲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감소 우려*, ▲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동 증대, ▲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확대 전망

* 고령화로 성장률 감소 전망: ('00~'15년) 3.9% → ('16~'25년) 1.9% (한은, '17.7월)

-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, 고용안전망 구축, 새로운 노동관계 규율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

☞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

III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1 기본 방향

목표 ① 국민의 '삶의 질(Quality of life) 향상'을 최우선으로 정책 추진

목표 ② '일자리 양과 질' 동시 제고, 일자리·소득주도성장 도모

목표 ③ 적극적 소통과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노동존중사회 구현

목표 ④ 인적자원을 혁신성장 견인 및 미래 대비를 위한 핵심요소로 활용

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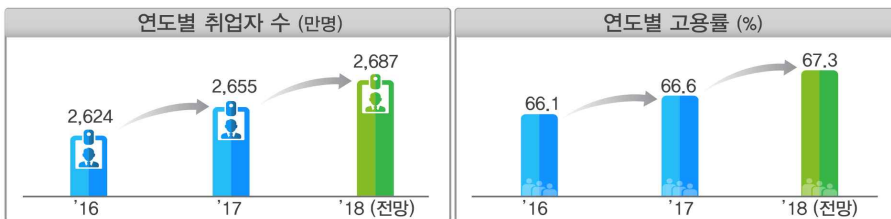
◇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, 일자리 질 제고로 격차 완화

◇ 청년·여성·신중년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어려움 극복

◇ 일터 인권이 지켜지고, 노사가 상생하는 균형 있는 노동현장 구축

□ 취업자 수 증가 및 고용률 개선

○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양적지표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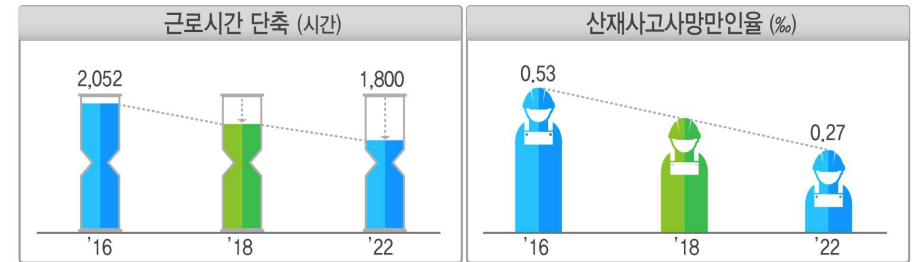


□ 임금·근로시간·산업안전 등 일자리 질 제고

○ 저소득·취약계층 노동여건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분배구조의 본격적인 개선세 지속

* 소득 5분위 배율: ('12) 5.54 → ('13) 5.43 → ('14) 5.41 → ('15) 5.11 → ('16) 5.45
임금 10분위 배율: ('12) 4.63 → ('13) 4.70 → ('14) 4.79 → ('15) 4.59 → ('16) 4.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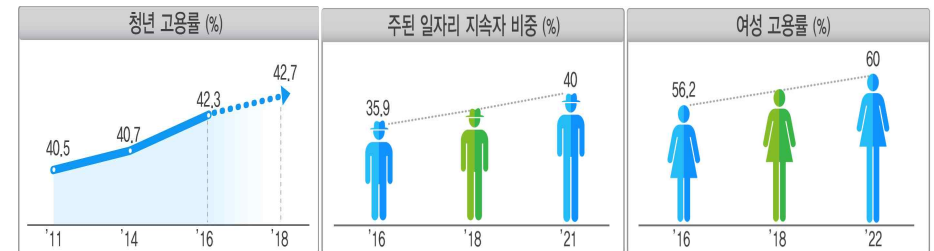
○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, '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50% 감축 할 수 있도록 감소세 유지



□ 정책 당사자 관점에서의 '핵심 일자리 애로사항' 해소

○ 청년 고용률(15~29세)을 42.7% 이상으로 높여 일을 찾는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, 일하는 청년의 일자리 질 제고

○ 중장년 주된 일자리 지속자 비중 '21년까지 40%, 여성 고용률 '22년까지 60% 목표달성을 위해 고용률 증가세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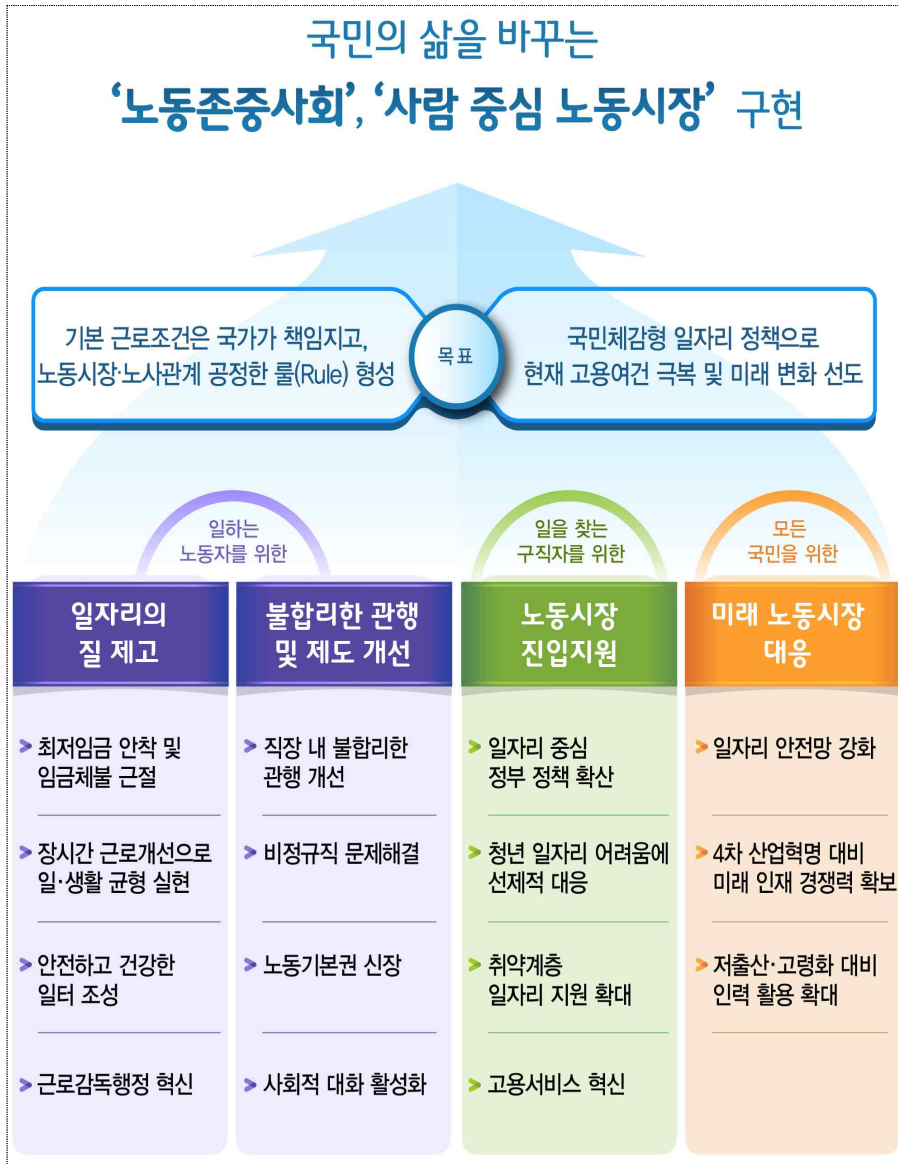
□ 현장 단위에서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

○ 부당노동행위, 성희롱 등 노동자 인권 침해 없는 직장 문화를 정착하고, 현장 갈등 예방, 조기해결 지원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

⇒ '18년말에는 OECD 평균 보다 낮은 '고용노동분야'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
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주요정책



1. 노동자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

❖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, 근로시간, 산업안전 등 기본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, 근로감독행정 혁신으로 뒷받침

☑ 현장의 목소리

- ▶ 2018년에는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(청년알바생 인터뷰)
- ▶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음('17. 9.15 소상공인 간담회)
- ▶ 직장인의 76.6%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(직장인 1,323명 대상 설문조사)
- ▶ 하청 노동자의 현장사고는 원청이 책임져야 함('17.9.22 현장노동청 제언)

① 최저임금 안착 및 임금체불 근절

□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-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차질없는 집행 지원*, 효과 분석을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(관계부처 합동, ~'18.7월)

* 전국 4천여개 신청창구 마련(고용센터, 주민센터 등), 신청·접수 특별기간 운영(~'18.2월)

-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을 위해 **사회보험료**(두루누리 사업) 지원 확대 병행(대상: 월보수 140 → 190만원 미만, 수준: 사회보험료 60 → 80~90%)

□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

- (감독강화) 경비·청소업, 편의점, 주유소 등 **취약업종 중심 중점 감독**(~'18.1월 ~, 5천개소 이상)
- **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**하여 영세 사업장 중심(30인 미만)으로 **업종별 자율점검사업 추진**, 최저임금 준수 유도('18.1월 ~, 6천개소)
- (제도개선)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내용*을 토대로 최저임금 **제도개선 방안 마련·추진**

* 주요내용 : ▲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, ▲ 가구생계비 계층·반영, ▲ 산업범위, ▲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배개선효과, ▲ 결정구조·구성, ▲ 업종·지역별 차등적용

□ 임금체불 근절 및 청산 지원

- (사전예방) 체불 사전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, 경비업·음식점업 등 취약업종 중심 감독물량 대폭 확대
- (체당금 확충) 체당금 제도를 개선*, 체불 노동자 생계보호 강화
*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(확정판결 요건 폐지), 체당금 수령기간 단축(7→2개월)
- (전담기구 신설) 체불 발생시 원스톱 지원(자율청산, 체당금, 민사소송 지원)



② 장시간근로 개선으로 일·생활 균형 실현

□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

- (법개정)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, 특례업종 축소 등 법 개정 노력
- (재정지원)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*에 대한 지원 확대
* 지원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 등) → 중견기업까지 확대
- (컨설팅)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인 진단·개선방안 제시 등 컨설팅 추진(노사발전재단 등)

□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혁신 지원

- (근로방식·문화 개선) 노동자의 상황(육아, 돌봄, 학업 등)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법제화('18.下 국회 제출)
- 일하는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'근무혁신 인센티브제' 도입('18년 모델 개발 → '19년 시범실시)
- 중소·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·시간선택제 활용 지원 강화('18.1월)
* (유연근무제)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비율 인상(25%→50%)
(시간선택제) 중견기업 지원금액 확대(월 30만원 → 60만원)
- (휴식권 보장) 휴일·휴가제도 개편방안 마련('18년)

③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

□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 이행

- (산업재해 감축) 현 정부 임기 내 사고사망만인을 절반 수준 감축('16년 0.53‰ → '22년 0.27‰)을 목표로 설정
- (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) 원청·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, 노동자 긴급대피권 명확화 등 주체별 책임과 권리 강화
- 특고, 배달종사자 등 안전보건 보호영역 확대('18.上 정부안 국회 제출)
- (감독혁신)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위해 취약 시기·유형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감독을 실시하고,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지도 강화
- 대형사고 특별감독, 사회적 이슈 등 수시 감독 전담팀 설치('18.1월~)

□ 타워크레인 등 재해 다발 高위험 기계·장비 특별 관리

- (타워크레인) 설치·해체 시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, 전담신호수는 배치 전 특별안전교육 의무화('18년, 산안법 및 시행규칙 개정)
- (高위험 기계·장비) 안전인증·검사를 강화하여 장비노화·기능 불량 등 기준 미충족 차량은 퇴출하고,
- 이동식크레인 불법 탑승설비,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 집중 단속('18년)

□ 감정노동자 등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강화

- (감정노동자)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및 건강장해 발생시(우려시) 사후조치 등 입법화, 사업장 컨설팅 등 건강보호 핸드북 이행 지도('18년)
- (산재 트라우마) 수도권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트라우마 전문상담 센터 설치, 상담전화 운영 등 적시 대응('18년 시범사업 → '19년 본격 운영)

□ 사업장 내 질병 예방

- (비용지원) 사업장 **작업환경측정·노동자 특수건강진단** 이행 지원을 **대폭 확대***하고, 지원대상도 **20인 미만** **전 사업장으로 확대****

* 비용지원: ('17) 130억원 → ('18) 401억원

** 작업환경측정: ('17) 20인 미만 일부지원(1.6만개소) → ('18) 20인 미만 전체지원(5만개소)
특수건강진단: ('17) 10인 미만 일부지원(10만명) → ('18) 20인 미만 전체지원(35만명)

-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, **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**

- (지도·점검) 유해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**10인 미만 사업장** 대상 **노동자 유해성 주지 및 측정·특검 이행여부 확인·지도** ('18년 4만개소)
- (정보공개)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기재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**명칭·함유량을 비공개**하려는 경우 **사전승인 의무화*** ('18.上 정부안 국회 제출)

*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**노동자의 안전·보건을 위한 정보는 알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** 기재

- (관리강화) 직업병 발병 사례 및 건강유해성이 새로이 보고된 **화학물질(27종) 법상 관리 강화**(특별관리물질, 허용기준설정물질 등으로 지정)

* 예) 담관암 발병 사례가 보고('12년 일본 30건)된 1,2-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관리물질로 지정

□ 수요자 중심 산재보험제도 개편

- (출퇴근 재해 보상)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재해 뿐 아니라 **통상적 경로·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도 보상**(18.1월~)
- (산재신청 제약요인 해소) 재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 등을 확인받도록 하는 **날인제 폐지**(18.1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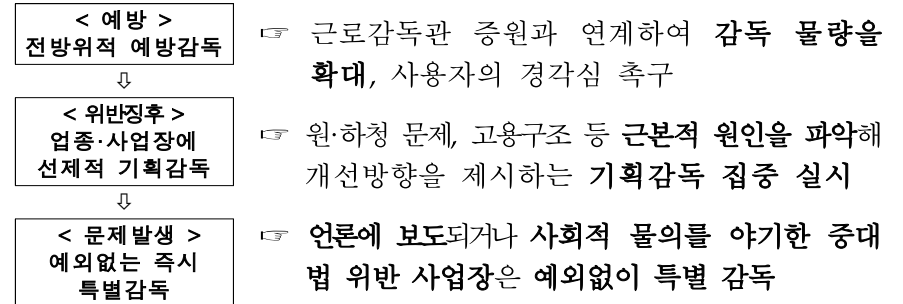
* (現)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경위 등 확인 요청 → (改)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확인

- (판정 공정성 제고) 「**질병판정위원회**」 위원(150→180명) 및 심의 횟수(1주 평균 2.3회→3회 이상) 확대 등 **충분한 심의시간 확보**(18.上)

4 근로감독행정 혁신

□ 전략적·사전 예방적 근로감독

- (현장 중심 감독)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**전략적 근로감독** 실시('18년 2.5만개소 실시, 전년 대비 25% 확대)



- (공정성·신뢰성 제고)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→ 실행 → 결과 공개까지 **공정성 제고 추진**

* 선정(빅데이터, 노사협의 등) → 실행(불시 감독) → 노사의 참여 확대(감독 강령 등 참여 의무화) → 이의제기(감독 청원절차 마련) → 감독결과 공개(법 개정 추진)

□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

- (감독 조치기준 강화) 노동법관계법 위반 시 **현행 '시정지시' 중심에서 '사법처리 원칙'으로 전환**
- (제재 강화) ▲채불에 대한 **징벌적 손해배상제** 도입, ▲**부과금 신설**(임채기금 귀속), ▲**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제**(20%) 적용 확대
- (검찰과의 업무협조)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상호간 이해 확대 등을 위해 **교육·인력파견 등 검찰과 협조 강화**

□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

- (채용절차) 노동전문가 선발을 위해 **고용노동직류 선발 추진**
- (교육강화) 내실 있는 교육(6주→12주)으로 **근로감독관 전문성 향상**
- (공정·투명성) 「**근로감독관 행동강령**」을 마련, 부조리·비리 차단

2.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

- ❖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'일터 인권'을 확립하고, 비정규직 문제 해결, 노동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법·제도 개선 추진
- ❖ 사회적 대화 복원을 통해 노사가 모두 공감하는 정책 수립

☑ 현장의 목소리

- ▶ 직장인 73.3%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음(인권위, 직장인 1,506명 대상 조사)
- ▶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억울함(현장노동청 의견)
- ▶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, 노사정사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(대통령, 10.24, 노동계 초청만찬)

①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

□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

- (예방교육) 매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, 미 실시 할 경우 사업주 대상 과태료 상향(300만원 → 500만원, '18.5월 시행)
- (피해자 보호)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 및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('18.5월)
 - 특히, '갑질 고객'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강화(노력조항 → 의무조항, 별칙 신설, '18.5월)
- (근로감독) 모든 근로감독(연간 2만여개)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*를 필수적으로 포함, 점검 강화('18.1월~)
 - *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, 교육내용의 충실성,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
- 적발 시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벌칙 부과('근로감독관 직무규정' 개정, '18.上)

□ 직장 내 괴롭힘 방지
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방지를 위한 기업 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·행정적 지원방안* 검토, 종합대책 마련·발표('18.3월)

* 예) (입법)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해결 조치 포함 등
(행정) 사업장 감독 강화(감독지침 마련), 사업주 매뉴얼 배포 등

□ 부당노동행위 근절

- (근로감독)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·수사 강화
 -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·운영하고, 감독 대상 확대(150개소 → 200개소) 및 의심사업장(300개소) 추가 선정·집중 모니터링
 - * 노사분규 빈발, 고소·고발 다수 제기, 사회적 물의 사업장 등 중심
 - 수사매뉴얼을 활용하여 현장 수사 활동을 지원하고,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등 부당노동행위 감독·수사 역량 제고
- (제재강화)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형량 상향(現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 방안 등 검토
- (신고센터)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「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(노동부 홈페이지)」 확대·개편
 - * 신고대상 확대(복수노조 관련 → 쏠 유형), 별도 배너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등

□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

- (구제이익 확대)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이 불가능*하게 되어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
 - * 근로계약기간 만료, 정년도달, 사업장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
-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금전보상명령제도 개선 검토
- (생활안정)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되지 않은 경우도 생활안정자금* 용자대상에 포함 ('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' 기 개정, '17.10월)
 - *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혼례비, 자녀학자금, 임금체불생계비 등

2 비정규직 문제 해결

□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

【 공공부문 : 정규직 전환 가속화 및 전환기반 마련 】

- (단계별 추진) 1단계 정규직 전환의 조속한 완료에 역량 집중
(‘18년 전환목표 7.7만명)
 - 2·3단계(▲자치단체 출연·출자기관, 공공기관 자회사 등, ▲민간위탁기관) 전환을 위해 합리적 전환기준 마련 및 전환 추진(‘18.下)
 - (임금체계 개편) 동일가치노동-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주요 직종의 ‘임금체계 표준모델’ 마련·발표(청소·경비 등 5개 직종)
 - (인사관리)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 인사관리규정(‘17.12월 배포) 현장 적용 및 확산
 - 특히, 정규직 전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‘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’* 확행 지도
- * ‘채용계획 수립(채용부서) → 심사(인사부서) → 후속조치(채용·인사부서)’ 등 절차 규정

【 민간부문 :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】

- (법·제도 개선) 기간제 노동자의 반복적 교체사용 등 방지를 위해 ‘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’*에만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법제화(‘18.下)
- * 해외 입법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반영, 현행 기간제법 예외 사유 개선
- 생명·안전 관련 업무*는 기간제·파견 노동자 사용 금지(‘18.下)
- * 구체적 범위 설정 등을 위해 실태조사, 전문가 논의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(‘18.上)
- (자율개선 유도) 기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뿐 아니라 소속 외 노동자의 주요업무를 포함한 사업장 단위의 현황도 함께 공시(‘18년)
- * (적용시기) 상시노동자 수 ▲3천인 이상: ‘18년 ▲1천인 이상: ‘19년
- 소속 외 노동자를 파견·용역·사내하도급으로 구분하고, 기간제, 단시간 노동자 주요 업무 공시 추진(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, ‘18년)

□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

- (차별시정제도 개편)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(‘18년~)
 - 비교대상 노동자의 인정범위*는 넓히고, 차별처우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유**는 축소
 - * ‘동일·유사’한 경우로 좁게 해석 → 동종·유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교대상자 확대
 - ** 기간제의 ‘동종·유사한 직무·경력’을 고려하는 안 등 허용사유를 축소하는 방안 검토
- 비교대상 노동자의 임금 등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을 신설하고, 노조·노동자 대표 등에 차별시정 신청(대리)권 부여 검토
- (현장 점검강화)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관서별 차별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·운영

□ 처우개선 등 보호 강화

- 원·하청 노동자 간 격차완화
 -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결과를 토대로 「원·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방안」 마련(‘18.下)
 - *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·산업안전 관리 등의 원청 책임 강화 등
 -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및 원·하청 공정거래* 등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장·단기 실행 로드맵 마련(관계부처)
 - * (공정거래) 적정 납품단가 보장,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엄정 대응 등 (상생협력) 대·중소 동반성장 지원 강화 등 (중소기업 생산성 향상)
 - 하도급관행(부당한 대금 인하 등), 임금지급 연대책임 점검 등 관계 부처 합동단속* 지속
 - * ‘17.9~11월 국토부·노동부 합동감독(49개 건설현장, 원·하청 96개소)
- 파견노동자 고용안정 도모
 - (감독강화) 파견·도급업체(1천개소) 파견법 위반 점검 및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* 수시 감독 → 위반 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등 적극 조치
 - *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고 불법파견 우려가 높은 사업장 및 업종
 - (지침개정) 파견·도급 구분기준 재정립, 고소·고발 사건 대상 직접고용 시정지시 허용 등 행정지침 개정 추진

3 노동 기본권 신장

□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

- (입법 前)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행정 수단을 동원하는 등 노동관행 지속 혁신

- 초기업단위 교섭 관행 형성을 위한 공공부문 및 업종별 교섭 모델 구축, 노동위원회의 복수사용자 교섭단위 통합지도 등 검토

* 위법 소지, 합리적 노사관행과 충돌하는 행정해석 정비 등 추진

- (입법개선사항)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급성, 노사 수용성 등을 고려,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화*

* 무분별한 손배·가압류 남용 제한, 부당노동행위 제재의 실효성 강화, 특수형태고용 노동자 보호,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, 노사협의회 개선 등

- 노사 이견이 작은 사항, 입법 불비 등으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우선 추진(18)

- (추진체계) 「전문가 위원회」 운영을 통해 공익전문가안 마련, 법·제도 개선과 함께 중장기 노사관계 방향 설정·혁신 추진

□ 노동존중 인식확산

- (청소년) '18학년도 중·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노동권 내용 반영·교육 실시, 정규과정 외에도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 적극 활용

* 지자체 협업을 통한 노동센터 추가설치 지원,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확대 병행 등

- (사업주) 사업주 대상 현장노동교육 신설 등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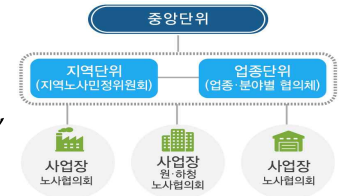
- (인프라) 외국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한 노동교육 콘텐츠 개발, 노동인권교육 관련 전문기관(예: 사회적기업, 비영리법인 등) 운영 지원

4 사회적 대화 활성화

□ 중층적 대화체제(중앙 - 지역·업종 - 사업장) 구축

- (중앙) 사회적 대화 활성화

- 노사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면서, 미조직 노동자 등 참여확대 추진



- (지역·업종)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업종·분야별 협의체 활성화

-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협의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사민정협의회 분과토 확대 추진

- 산업별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, 산업별 노사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, 업종·분야별 노사정 협의체 활성화 지원*

*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선언('17.8.23.), 일자리토 건설특위 운영 등

- (사업장) 정규직·원청 중심 노사협의회 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

- 비정규직·파견·사내하도급 등 미조직 노동자의 노사협의회 참여 및 노동자위원 선출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성·대표성 확보

- 원·하청간, 하청 간 공동사항 협의를 위한 「통합노사협의회」 도입 추진

□ 90%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 이해대변 및 권익보호 강화

- 중앙·지역·업종단위의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와의 소통채널을 마련, 정례적 논의 및 정책 반영 추진

-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상 상담·법률지원·교육 등 권익보호방안 마련

- 다양한 대상·주제별 토론회,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, 각계 참여 확보 및 대국민 관심 제고

3. 민생·현장 중심 정책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

❖ 범정부 일자리 중심 정책 확산, 청년·취약계층 등의 현장 수요를 파악하여 밀착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,

☑ 현장의 목소리

- ▶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일자리('18.1월 대국민 설문조사)
- ▶ 산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 ('17.9.27 청년간담회)

① 일자리 중심 정부정책 확산

□ [재정집행] 1월 초부터 집행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('17.12월) 철저, 일자리사업 예산(19.2조원, 청년 3조원)의 조기 집행을 대폭 강화
(1/4분기 조기집행: '17년 33.1% → '18년 목표 34.5%이상)

□ [일자리사업 효율화] '17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·효율화* 본격 추진

- * ① 유사·중복·소규모사업 통·폐합 등 사업구조 개편, ② 개별 사업 운영개선, ③ 사업별 종합평가(5등급) 결과와 예산 연계 등

□ [평가·인센티브] 예산 편성 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핵심 지표화

- 모든 일자리사업, 100억원 이상 R&D, SOC, 조달사업 등의 고용효과를 도출하고,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 우선 배정(~'18.8월)
- '고용창출모범기업(가칭)·좋은 일자리 기업(가칭)' 추진('18.5월, 신설)

□ [고용상황 모니터링] 산업·지역별 고용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

-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·업종별 피보험자 현황을 분기별 점검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 검토(現, 필요지역만 수시점검)
- 고용노동 상황판의 본격 가동으로 주요 현안 실시간 관리

* (현안 신속대응) 주요 현안 실시간 모니터링, 즉시 조치
(정책 총괄관리) 임금체불, 비정규직 등 정책 추진현황 실시간 관리
(지역관리 체계화) 지역별 상황 등을 한 화면에 표출, 비교 분석·관리

② 청년 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 대응

□ 청년 '3대 패키지 사업' 내실화

- (구직단계)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 지원을 위한 '청년구직촉진수당' 개편 방안 마련 및 인프라 구축('18년 시행준비 → '19년 시행)
- (채용단계) 성장유망업종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'청년 추가 고용장려금(2+1)' 제도 개선
- (재직단계) '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'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고, 장기재직 일시장려금(충기부) 등을 통해 추가 장기재직 유도

< '3대 패키지 사업' 개편 주요내용 >

구직단계	채용단계	재직단계
청년구직촉진수당	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(2+1)	청년내일채움공제
지원대상 (17)9만5천 → (18)19만	지원대상 (17)3천 → (18)15천	지원대상 (18) 5만
	지원요건 (17) 3,69인 고용시에만 지원 → (18) 인원비례 지원(4인 고용→ 13명분)	추가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, 1600만원) +내일채움공제(5년 평균 2,500만원 중기부) +장기재직 일시장려금(400만원 중기부)
	지원한도 (17) 기업당 3명 → (18) 피보험자수 30% 범위내	

□ 다양한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

- (해외취업) 한일 대학간 3+1제도 활성화*, K-Move스쿨 집중지원 등을 통해 일본·아세안 지역 1만명('18~'20년) 취업 지원**

* 예) 우리 대학 3년 + 일본 대학 1년 → 일본 취업

** 국내 대학·일본 대학 간 매칭 행사 개최('18.上)

- (공공부문)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을 개정하여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 조정(3→5%) 추진
- (직접일자리) 정부 일자리 사업 중 청년(34세 이하) 적합 일자리 사업*(17개, 2.6만명)의 청년 우대선발 비율 확대(최소 50% → 7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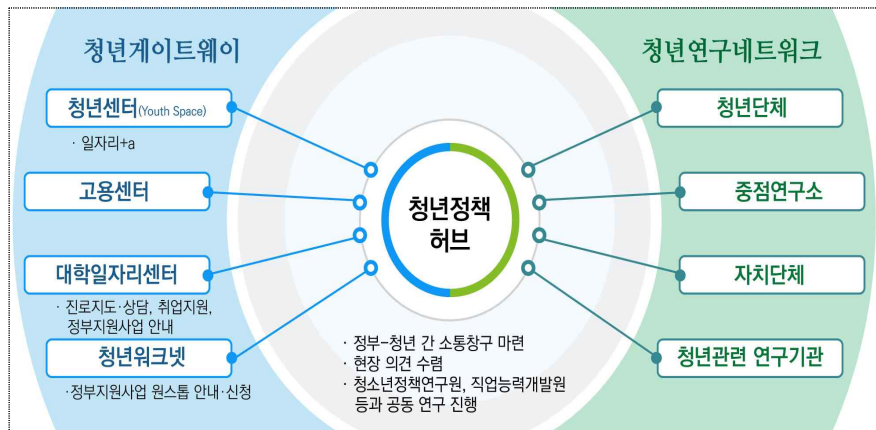
* 항공전문인력양성,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, 글로벌청년 리더 양성 등

□ 취업지원서비스의 청년 체감도 제고

- (환경개선) 현장 수요를 토대로 범부처 「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합동공모」를 확대 실시하여,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

* (참여부처) 4개 부처, 9개 사업 → 7개 부처, 20개 사업
 (지원분야) 고용·정주여건 개선 → 기업혁신·환경개선 포함
 (예: 클라우드 확산 기반 조성)

- (청년정책허브 구축) 청년단체, 청년정책관련 연구기관, 청년정책 전달기관 등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심점으로서 청년정책허브 구축



□ 청년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

- (청년고용점검회의) 청년고용 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 점검을 위한 청년고용점검회의 개최(대통령 주재, 1월)
- (참여형 대책) 청년들이 정책형성에 참여*하는 방식으로 개선과제 발굴하여 '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' 마련

* 청년 단체대표, 학계·현장 전문가, 정부 관계부처, 일반 청년참여단(100~200명) 참여

3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

□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훈련 확대

- (근로여건 개선)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필요·최소한으로 엄격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인가기준 강화(90% → 70%)
- *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민·관 참여 TF 구성·운영
- (훈련인프라)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위한 설계 착수(경기남부),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맞춤형훈련센터 확대(각 3개) 등 훈련기회 확대

□ 건설업 종사자의 고용·복지 증진

- (고용지원) 심화과정과 혼합과정 확대 등 기능향상훈련을 다양화 하고, 무료 취업지원 센터 운영 내실화(계속)
- * '건설현장 이동상담실' 운영 확대(새벽인력시장에서 건설현장까지 확대)
- (복지강화) 공제부금 일액인상(4,200원 → 5,000원) 및 수급 요건 완화, 주요 건설현장 원·하청업체 대상 '퇴직공제부금 성실납부 캠페인' 강화
- (근로환경 개선) 편의시설 설치 점점을 강화하고, 공사규모·특성 반영 등 설치기준 세분화
- *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.上)

□ 사회적기업의 창업 확산 및 자생력 제고

-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지원을 확대('17년 500팀→'18년 550팀) 하고, 인증제도 개선·예비사회적기업 참여분야 확대 등 진입장벽 완화
- 점검대상 확대*, 상시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제재 기준 강화**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

* (합동·정기점검) 재정지원 받는 (예비)사회적기업 → 전 (예비)사회적기업
 ** (형사고발 기준)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→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

-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로드맵('18.3월)과 사회적경제의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('18.上)

4 고용서비스 혁신

□ [H/W]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센터 혁신

-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로 효과적 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'실업급여 지급' 보다 '구직자 취업상담·알선' 기능 강화
- 단순·반복적 구직활동 확인 행정체계에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업인정 제도 개편*('18년 초, '17년 추진 관련 연구결과 반영)
 - * ▲ 자치단체·민간위탁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, 자기주도적 훈련·학습 등 재취업활동 인정방식 다양화, ▲ 연령 등 수급자 특성별 실업인정 개발 등
- 직업상담원 처우개선, 교육강화(장기과정 신설 등 종합 교육계획 마련), 경력관리체계 구축 등 고용센터 내 상담원을 주요인력으로 지원·관리
-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관(자치단체·민간위탁기관 등)의 취업지원 관련 개인정보 부정사용 예방 강화('18.上)
- 개인정보보호 등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교육 강화
 - * 취업실적 모니터링 대상 확대(現 알선취업 → 改 본인취업), 교육 강화(現 사이버교육 → 改 집합교육 의무화), 워크넷 ID 회수 강화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 등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위반 및 취업실적 조작 가능성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고용안전정보망(워크넷) 전면 점검 후 시스템 개편('18.1월, TF 운영)

□ [S/W] 취업성공패키지 개편('18.1월)

- (위탁 운영 효율화) 고임금일자리에서 장기간고용이 유지되도록 민간위탁기관 위탁비 지급체계* 및 평가 개선**
 - * 위탁비 성공금 지급기준: (現) 14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 시 → (改) 165만원 이상
 - ** '1년 고용유지율'을 평가지표에 신설
-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검증을 위해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('18.上, 시범실시) 하고, 역량이 미흡한 민간위탁사업은 퇴출
- 취업보다 수당 수급이 주목적인 자 참여제한, 수요자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확대(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등) 등으로 사업 내실화

4.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노동시장 대응도 철저히 하겠습니다

❖ 고용안전망 확충, 노동시장 규율 개선 등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및 미래 적합 직업훈련으로 인재 양성, 인프라 구축 병행

☑ 현장의 목소리

- ▶ '18년 최우선과제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(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)
- ▶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훈련과정이 부족함.(현장노동청 의견)

1 일자리 안전망 강화

□ 고용안전망 확충

- (가입 촉진)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,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·수준 개선
 - * (지원대상) 월보수 140만원 → 190만원 미만, (지원수준) 사회보험료의 60% → 80~90%
- (사각지대 해소) 특고·예술인, 고령자,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, 중·장기적으로 가입요건을 '소득'으로 전환 추진
- (보장성 강화) 실업급여 지급수준·기간을 동시 개선*하여 고용보험 가입자의 보장성을 강화('18.7월)
 - * 지급수준은 10%p 이상 인상(現 평균임금의 50%), 지급기간은 30일 이상 연장

□ 산재보상 확대

- (산재보험 적용 확대) 2,000 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,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('18.7월)
 - 현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노동자·1인 자영업자·태아·무급가족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
- (산재인정 기준 개선)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 확대를 위해 현행 1주 평균 60시간 기준과 함께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* ('18.1 시행)
 - * ▲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교대근무, 유해환경 노출 등 가중요인 해당 시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 신설 ▲ 야간근무는 업무시간 산출시 주간근무 30% 가산
- 법적 요건 충족 시 별도 입증 없이 당연인정 되는 기준을 추가하여 직업성 암 산재보상 확대

□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

-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따른 실업·실직 등에 대비 비진학 청소년, 신중년, 경단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
-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 전·후 평생 동안 고용유지 및 능력개발을 위한 「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」 검토
- * 경력단절여성, NEET등의 직업관련 학습참여를 촉발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(가칭 Learning Next)의 도입방안 연구 착수('18년)

②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인재경쟁력 확보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확대

- (신산업·신기술 훈련)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” 과정 운영
- 폴리텍 신기술·융합교육 모델을 확산하여 공공·민간 훈련기관에서 창의 인재 양성 확대
- * 차세대 훈련방식을 접목한 폴리텍 하이테크 훈련 확대('17. 395명 → '18. 545명),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('17. 성남 1개소 → '18. 수도권 1개소 신설, 390억)
- (스마트 플랫폼) 훈련 공급기관이 콘텐츠를 설계하여 자유롭게 온라인에 탑재·거래하는 ‘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’ 구축 ('18년 구축, '19년 운영)
- * ‘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’을 통해 훈련기관·훈련생·멘토가 쌍방향 소통하는 기술 환경 구현
- (자격 개편) 로봇, 바이오 등 미래유망분야 새로운 직업과 관련된 자격 종목을 신설하여 산업 인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

□ 미래 대비 인프라 구축

- (전망) 향후 고용변화를 예측하는 ‘4차산업혁명 인력수급전망’ 발표('18.2월), 새로운 고용형태(플랫폼 노동자 등)에 대한 실태조사 시범 실시(한고원)
- (통계) ‘일자리 질’ 평가지표 마련 등 통계 개선 검토(통계청 합동)
- (정보망) 고객(구직자·노동자·기업) 정보(DB)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구축('18년말)
- * 고용보험, 워크넷, HRD-NET 등 고용정보시스템을 기업-노동자 중심으로 연계

③ 저출산·고령화 대비 인력활용 확대

□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 구축

-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
- (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) 고용평등 기초질서 확립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조항 적용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
- *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삭제('1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)
- (적극적 고용개선조치<AA> 확대) AA 적용사업장에 지방공기업 추가, AA 부진 사업장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 제출의무 부과('18.1월~)
- (스마트 근로감독 확대) 건강(임신·출산)-고용(사업장) 연계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 확대('17년 550→'18년 600개소)
- 남녀 노동자 출산·육아 지원 확대
- (임신) 난임치료 휴가(총 3일, 유급 1일) 신설('18.5월~), 임신 중 육아 휴직 허용 추진('1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)
- (출산) 출산휴가급여 인상(월 150→160만, '18.1월~),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남은 법정 출산휴가급여 지급 추진('18년 고용보험법 개정)
- (육아) ‘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’ 상한 인상('18.7월~)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(최대 1→2년) 및 급여 인상(통상임금 60→80%, '18.1월~)
- * (현행) 첫째 월 150만, 둘째 이상 월 200만, → (개선) 모든 자녀 월 200만
- (보육) 중소·영세사업장 맞벌이 노동자 지원을 위해 거주지역(역세권) 중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충('18년 3개소 시범설치)
- 양질의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
- (가사서비스 공식화) 여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가사서비스 시장 제도화('17.12월 법제정안 국회 제출)
- (경단여성 취업지원) 경단여성 특화서비스를 시범도입*하여 경력단절 후 재취업 욕구가 큰 35~49세 여성 단계별 중점 지원
- * '18년 진단도구-매뉴얼 개발 및 2개소 시범 운영 검토

□ 新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○ 인생 2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단축 활성화

-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외 근로자 개인이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* 지급

* 50세 이상 신중년이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임금하락분의 50%를 지원(월 최대 90만원, 2년)

○ 신중년 재취업 지원 강화

- (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) 생애전환기(40대·50대·60대)에 경력진단·인생 2·3모작 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령대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('17년 2만명 → '18년 2.5만명)

- (고용창출장려금 신설)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년 적합직무를 선정하고,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* 지원

* 1명당 우선고용지원기업 80만원, 중견기업 40만원

○ 사무관리직·기술기능직 등 직종별 특화훈련 확대

- (신중년 사무관리직학교) 사무·관리직 퇴직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발굴하여 특화과정 신설 추진('18년~)

- (신중년 특화과정 운영) 기술·기능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폴리텍*을 통해 시니어헬스케어, 자동차복원 등 6개 과정 제공

* 서울 정수, 서울 강서, 남인천, 대구

○ 신중년의 특성과 사회적 수요를 연계한 일자리 발굴·확산

- (지자체 협력형) 중장년층이 다수 참여하여 지역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'우리동네 사회적기업 모델' 발굴·확산

* 자치단체 우수 모델 시상 등 인센티브 추진

- (퇴직인력 활용) 교수·연구원 등 퇴직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활용하는 '사회공헌일자리' 확대 ('17. 6천명 → '18. 6.5천명)

2

당면 현안 : 최저임금 안착

□ 현 황

- 격차해소·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'18년 최저임금 7,530원 결정(전년 대비 16.4% 인상) → '18.1.1.부터 적용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부담 완화,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지원

- 그간 노사, 전문가 등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지속 제기

*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정부에 건의키로 노·사·공 합의

□ 쟁 점

- 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미흡 등으로 고용불안, 최저임금 미준수, 부당·위법한 임금 인상 등의 문제 발생 우려

-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주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

-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은 노·사간 의견이 대립

* △ 산입범위: 勞 현행유지(기본급 등만 포함), 使 상여금, 숙식비 산입범위에 포함
△ 차등적용: 勞 현행유지(단일의 최저임금), 使 업종·지역별 차등적용 필요

□ 향후 계획

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

【 사업시행 초기 정부역량 집중 투입 】

- 사업 안착을 위한 특별기간 운영('17.12월말~'18.2월말)

- 「최저임금 특별상황 점검 TF」(노동부 차관 주재) 운영, 안정자금 관련 현장 동향 상시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

- 근로복지공단 중심으로 접수기관 매칭한 핫라인 구축·운영

* 접수기관(복지·건보·연금공단, 고용센터, 주민센터)간 연계강화, 복지공단 지사에 Help Desk 운영해 민원 즉시 해결, 담당자 (보수)교육 실시 등

-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('17.12.20~'18.1월)
 - 안정자금 접수·안내 상황, 사업주 인지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집중 점검·보완하여 차질 없는 시행 지원

○ 집행상황 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

- 보조금 통합관리망, 고용보험 DB 등 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,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및 모니터링 전담팀(복지공단) 운영

【 전방위 홍보 강화 】

- 1~2월중 TV·라디오·신문, 온라인(네이버·다음 등), 버스·지하철 등 대중매체 통한 눈높이 홍보 집중 추진
- 지방관서별 안정자금 전담팀 구성('17.12.11. 총222명)·운영을 통한 지역 단위 사업주 밀착 홍보·안내

【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자금 지원 효과 분석 모니터링 】

- 분야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·운영(①고용·임금 통계분석, ②현장 모니터링, ③재정지원 효과 분석 등)
 - 필요시 안정자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, 안정자금→ EITC·사회보험 지원강화로 전환 등 개편방안 마련(관계부처 합동)

② 최저임금 준수 제도·점검

-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불법·편법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 접수, 사실 확인 후 시정('18.1.8.~)
- 아파트·건물관리업, 편의점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3주간(1.8~1.28) 제도 후 점검 실시(1.29~3.31, 5천개소)
 -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* 추진('18.1.12.~)

*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를 자율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·캠페인 등 지원

③ 최저임금 제도 개선

-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내용*을 토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·추진

* 주요내용 : ▲최저임금준수를 제고, ▲가구생계비 계층·반영, ▲산업별위, ▲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배개선효과, ▲결정구조·구성, ▲업종·지역별 차등적용

붙임

2018년, 고용노동부 사업 주요 제도 개선 내용

구 분	사업명	'17년	'18년	비 고
청년	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	규모 방식	3천명 3, 6, 9인 고용시에만 지원	15천명 인원 비례 지원 (예:4인 고용 →1.3명분)
	청년내일채움공제	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청년만 지원	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 누구나 지원 임금요건완화 (최저임금 110→100%)	
	청년구직촉진수당	9만5천명	19만명	
	소액채당금 지급기간 (최대 400만원)	평균 7개월	평균 2개월 (확정판결 요건 폐지)	상반기 중 법개정안 제출
	저소득 청년노동자 혼례비 용자	1,000만원	1,250만원	
	청년 해외취업지원	-	일본·아세안 중심 (3년간 1만명) 사후관리 강화	
	청년적합 일자리 사업 (17개), 청년 선발비율	최소 50%	최소 70%	
	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	3%	5%	법개정안 국회 계류
	기간제노동자 육아휴직	1년 이상 재직	6개월 이상 재직	'18. 7월 예정 (시행령 개정중)
여성	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	-	3개소	
	출산휴가급여 (상한액)	월 150만원	월 160만원	
	아빠 육아휴직보너스 (상한액)	월 150만원	월 200만원	
	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금(최대 연720만원)	육아휴직자 복귀시에만 지급	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시에도 지급	
장년	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 장려금	-	신설	舊 장년인턴제 폐지
	취업성공패키지Ⅱ 중장년최저임금실적자 참여요건	중위소득 100% 이하	중위소득 120% 이하	
	고령자 고용지원금	분기별 18만원	분기별 24만원	
	생애경력설계 서비스	20천명	25천명	
	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	4.5천명	6.5천명	

구 분	사업명	'17년	'18년	비 고
장애인	장애인 청년구직촉진수당	-	신설 (3개월간 월 30만원)	'17.11.1. 기 시행
	장애인 고용부담금* 부담기초액(1인당)	81만 2천원	94만 5천원	*장애인의무 고용인원 미달시
	맞춤훈련센터/ 발달훈련센터	3개소 / 4개소	6개소 / 7개소	
	장애인 고용장려금	월 40만원 (중증남성)	월 50만원 (중증남성)	
일자리 지원체계	19.2조원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	1분기 목표 : 33.5%	1분기 목표 : 34.5%	
	고용영향평가 (재정사업)	249개	1,000여개	
사회적 경제	모태펀드 신규 조성	-	75억	
	판로 지원 통합플랫폼	-	신설	
일자리 안전망	두루누리 사회보험료	지원대상	월 보수 140만원 미만	월 보수 190만원 미만
		지원수준	40~60%	40~90%
	4차산업혁명 고졸인력 양성		-	신설 (8개학과)
	P-Tech 과정		3개교 (폴리텍)	20개교 (폴리텍+전문대)
	실업급여	지급수준	평균임금의 50%	평균임금의 60%
		지급기간	90~240일	120~270일
		상한액	일 50,000원	일 60,000원
		하한액	일 46,584원	일 54,216원
	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기간		창업후 1년까지	창업후 5년까지
	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		-	신설 (사업주 부담금 등 지원)
				법개정안 국회 계류

구 분	사업명	'17년	'18년	비 고
근로조건 개선	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	월 최대 60만원	월 최대 80만원	'17.10.1. 기 시행
	공공부문 정규직 전환	중앙정부, 지자체 등 전환결정(7.4만명)	출연기관, 공공기관 자회사 등(7.7만명)	
	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액	4,200원	5,000원	
	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멸시효	3년	5년	법개정안 국회 계류
	최저임금 인상	시간급 6,470원 (월 환산 135만원)	시간급 7,530원 (월 환산 157만원)	
	일자리안정자금 지원		-	신설 (1인당 월 최대 13만원)
	디지털 증거분석팀		1개소 (서울)	6개소 (서울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)
	연차휴가 확대	신규	2년간 최대 15일	2년간 최대 26일 (첫해 11일 + 2년차 15일)
		육아휴직 복귀자	-	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보장
	근로감독관 총원		1,898(+200명)	2,463명(+565명)
일-생활 균형 실현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		감액급여의 60%	감액급여의 80%
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		1년	2년
	1주 최대근로시간		주 68시간	주 52시간 (규모별 단계적 적용)
	근로시간 특례업종		26개	10개(또는 폐지)
	근로시간 단축 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(1인당 월 10~40만원)		중소기업	중소기업+중견기업
	시간선택제 신규고용 (중견기업)	지원요건	최저임금 120% 이상	최저임금 110% 이상
		지원수준	월 30만원	월 60만원
	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(직접지원)		투자비용의 25% (최대 2천만원)	투자비용의 50% (최대 2천만원)